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1. 6. 2009고단339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최태은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정진호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2,600,0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